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86호 2020. 1. 6(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5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 ----- 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1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호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 1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호 2020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 1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17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0-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제23조 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청서로 61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01.06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1-0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62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61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서쪽에 위치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4-96	인천광역시 서구 모석로 18 (청라동)	20130730	모석을 이용한 경관구조계획 개념에서 착안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불로동 803-1번지 외 3필지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주)대광에이엠씨 (대표자 : 김남석)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803-1번지 외 3필지
 - 나. 대지면적 : 27,301.1m²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79,865.1817m² (지하 2층, 지상 27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6개동 556세대
 - 마. 사 업 비 : 160,395,158천원
4. 사업기간 : 2019. 6. 1. ~ 2022. 3. 31.
5. 변경사항
 - 가) 지하1층(102~105동) 바닥 레벨 변경
 - 기존: 26.70
 - 변경: 26.65

- 나) 지하1층 주차장 동출입구 바닥마감 변경
 - 기존: THK50 시멘트몰탈/지정석재
 - 변경: THK100 시멘트몰탈/지정석재
- 다) 지하1층 주차장 마감 변경
 - 기존: 콘크리트 슬라브/에폭시페인트
 - 변경: 무근콘크리트/에폭시페인트
- 라) 지하1층 주차장 슬라브 및 마감 레벨 변경
 - 기존: SL,FL 26.70
 - 변경: SL 26.65, FL 26.75
- 마) 지하주차장 주차면 위치 이동
- 바) 재활용품 창고 신설
- 사) 구조심의 반영 및 구조 보강
- 아)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 2020 - 5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 통제 구역 및 등산로 폐쇄를 지정·고시 하오니 지역주민을 비롯한 산을 이용 하시는 모든 국민들의 자율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2020. 1.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통제구역 지정사항 : 입산통제(457ha)
2. 통제 및 폐쇄기간 : 2020.02.01.~2020.05.15.
3. 통제 및 폐쇄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 통제의 범위 : 입산 통제구역내 전체산림 및 산림에 포함된 숲길을 포함(약수터주변 및 주 등산로 제외)
5. 기타 사항
 - 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함.
 - 나. 무단 입산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다. 「산림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구역내 및 인화, 발화

물질소지 입산을 금지하며 위반자는 같은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공원녹지과(032-560-47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동 별	입 산 통 제 내 역			
	대표산	필지수	지정면적 (ha)	기 타
계		311	457	
가좌4동	호봉산	25	34	
가좌3동	원적산	14	20	
가좌2동	원적산	14	11	
석남3동	원적산	20	53.3	
가정3동	원적산	10	13.7	
가정1동	승학산	24	24.5	
가정2동	천마산	11	34.5	
심곡동	천마산	22	48.9	
백석동	등그재산	29	30.7	
마전동	가현산	23	29.5	
금곡동	가현산	23	40.4	
대곡동	가현산	34	56.8	
불로동	황화산	26	34.1	
원당동	고 산	36	25.6	

【붙임 2】 등산로 등급별 지정내역

산이름	소재지	구 간 (시점,기점,종점)	연장(km)	비고
계	-		50.5	
호봉산	가좌4동	코스모스약수터 ~ 동인천여중 ~ 한전입구 ~ 호봉약수터	3.0	
		코스모스약수터 ~ 정상 ~ 호봉약수터	3.5	
		유영아파트입구 ~ 호봉약수터	1.3	
원적산	가좌2동	노인복지회관 ~ 원적산 생태통로	1.0	
		벤엘교회 ~ 정상	0.5	
	가좌3동	원적정 ~ 천마 약수터	2.0	
		천마약수터 ~ 명학 약수터	1.5	
	석남3동	석남약수터 ~ 원적산 생태통로	1.5	
철마약수터 ~ 마가의다락방 철마정 ~ 석남약수터		1.5 2.0		
가정3동	문화회관뒤 ~ 정상	2.5		
승학산	가정1동	서인천변전소 ~ 봉우재 ~ 국제대로	2.5	
천마산	가정2동	봉수초교뒤 (하나아파트 뒤) ~ 서곶근린공원 ~ 경명로	10	
	심곡동			
계양산	공촌동	은지초교 뒤 ~ 헬기장 ~ 계양산 꽃피마을 ~ 정상	3.0	
	검암동		1.7	
가현산	대곡동	해병2사단옆 ~ 묘각사 ~ 약수터 · 현무정	6.0	
	금곡동			
	마전동			
황화산	불로동	검단2동사무소뒤 ~ 정상 ~ 원당동	4.5	
할메산	백석동	백석스포츠센터 ~ 원당대로	2.5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6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6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 이훈복)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6블록
 - 나. 대지면적 : 45,732㎡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43,911.6847㎡ (지하2층, 지상21~28층)
 - 라.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 936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업비 : 359,000,000천원
4. 사업기간 : 2018. 12. 10. ~ 2021. 08. 31.

5. 변경사항

- 가. 지하 피트 벽체 및 지하주차장 지붕 방수 일부 변경
- 나.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상부 내민길이 변경
- 다. 근린생활시설 바닥 및 지붕 슬라브 높이 변경
- 라. 출입구 차선 추가 및 이에 따른 조경, 문주, 경비실 등 변경
- 마. 지하층 방풍실 창 변경 등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1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1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티에스건설(주) (대표 김재용)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1블록
 - 나. 대지면적 : 43,894m²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20,720.9736m² (지하2층, 지상2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8개동 719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307,146,869천원
4. 사업기간 : 2019. 11. 01. ~ 2022. 05. 01.

5. 변경사항

- 가.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창고 위치 및 고정 창 변경 등
- 나. 근린생활시설 전열교환기 및 온수기 위치 변경
- 다. 가설흡막이 변경 등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0 - 6호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와 19세 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 1.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단위:명]

19세이상의 주민수		19세이상의 주민총수 ③ (①+②)	19세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③×1/40)
내 국 인 (선거권없는자제외) ①	외 국 인 (영주권 취득후 3년 경과자) ②		
439,924	975	440,899	11,02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0 - 7호

2020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주민투표법』 제9조 4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제5조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명)

구 분	총 수	내국인수	외국인수 (영주자격자)	투표청구 주민수 (청구인수비율)	비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441,153	439,924	1,229	36,763(1/12)	

※ 내국인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외국인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19세 이상 외국인

2020. 1.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0 - 8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구청장>

(단위:명)

동별	청구권자 총수			서명인수	최 소 서명인수	비 고
	계	19세이상주민	등록 외국인 (19세이상)			
계	440,899	439,924	975	66,135		
검암경서동	37,360	37,268	92		4,409	
연희동	36,514	36,450	64		4,409	
청라1동	23,318	23,275	43		3,498	
청라2동	35,980	35,933	47		4,409	
청라3동	19,441	19,422	19		2,917	
가정1동	22,953	22,899	54		3,443	
가정2동	6,033	6,027	6		905	
가정3동	8,890	8,871	19		1,334	
신현원창동	27,123	27,080	43		4,069	
석남1동	20,312	20,225	87		3,047	
석남2동	12,236	12,184	52		1,836	
석남3동	13,318	13,292	26		1,998	
가좌1동	10,633	10,572	61		1,595	
가좌2동	17,701	17,685	16		2,656	
가좌3동	14,792	14,765	27		2,219	
가좌4동	9,546	9,522	24		1,432	
검단동	27,180	27,074	106		4,077	
불로대곡동	18,254	18,235	19		2,739	
원당동	18,709	18,689	20		2,807	
당하동	22,445	22,381	64		3,367	
오류왕길동	20,016	19,956	60		3,003	
마전동	18,145	18,119	26		2,722	

※ 산정된 서명인 수 66,135명 이상의 서명을 받되, 8개 동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구의원>

(단위:명)

구별	선거구별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수			서명인수	최 소 서명인수
			계	19세이상주민	등록외국인		
서구	가선거구	계	45,434	45,309	125	9,087	
		검단동	27,180	27,074	106		
		블로대곡동	18,254	18,235	19		
	나선거구	계	59,299	59,189	110	11,860	
		원당동	18,709	18,689	20		593
		당하동	22,445	22,381	64		593
		마전동	18,145	18,119	26		593
	다선거구	계	93,890	93,674	216	18,778	
		오류왕길동	20,016	19,956	60		939
		검암경서동	37,360	37,268	92		939
		연희동	36,514	36,450	64		939
	라선거구	계	78,739	78,630	109	15,748	
		청라1동	23,318	23,275	43		788
		청라2동	35,980	35,933	47		788
		청라3동	19,441	19,422	19		788
	마선거구	계	56,109	56,006	103	11,222	
		가정1동	22,953	22,899	54		562
		가정2동	6,033	6,027	6		562
		신현원창동	27,123	27,080	43		562
	바선거구	계	54,756	54,572	184	10,952	
		가정3동	8,890	8,871	19		548
		석남1동	20,312	20,225	87		548
		석남2동	12,236	12,184	52		548
		석남3동	13,318	13,292	26		548
	사선거구	계	52,672	52,544	128	10,535	
		가좌1동	10,633	10,572	61		527
		가좌2동	17,701	17,685	16		527
		가좌3동	14,792	14,765	27		527
		가좌4동	9,546	9,522	24		527

※ 각 선거구별로 산정된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되, 선거구안에 3개이상의 동이 있는 경우 각 선거구별 1/3 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인천광역시 서구 제2020-1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20. 1. 6. ~ 2020. 1. 20.(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 차량	등 록 호	60다9582 외 12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 할 관 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5747, FAX 032-560-2793)		

3. 유 의 사 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 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자동차)를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 032-560-57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1	60다9582	김*정	2019.12.30	
2	56수5011	오*근	2019.12.29	
3	62고5232	최*호	2019.12.26	
4	57소1613	박*아	2019.12.23	
5	43노2998	박*지	2019.12.23	
6	55루1066	남*문	2019.12.20	
7	90머8026	김*출	2019.12.19	
8	45거6756	최*건	2019.12.19	
9	04고6085	박*호	2019.12.19	
10	서울33거3510	김*자	2019.12.19	
11	부산80도5272	이*환	2019.12.18	
12	87라1707	이*석	2019.12.17	
13	12머6725	이*준	2019.12.09	